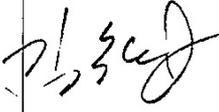


	회 장
상근부회장	
	

2013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3. 10. 25.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10. 25(금) 11:00 ~ 12:25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27명 중 24명 참석(감사 2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4명) : 이동한, 고치환, 김재익, 송옥희, 부형중, 강규진, 김순호, 양은심, 양광호,
김호성, 황익식, 김군택, 고두승, 임태봉

나. 위임(10명) : 이연봉, 최영열, 김용희, 김성숙, 김성산, 고은택, 강동화, 김금자, 양은정,
박정해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부장의 성원보고 후 이동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에게 고맙다고 하다. 오늘 임시이사회에서는 추
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제6대 회장 선거일정 결정, 선거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들을 심의하
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참석하신 이사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김호성 이사 : 김성건 부장의 전차회의록 낭독에 앞서 회의자료에 첨부된 사안임으
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회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2회 후원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 제주 나눔 대축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1회 아동급식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2회 아동·청소년 나이트케어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7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8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규정 일부개정안, 제9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불용품 매각 승인안, 제10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6대 회장선거(임시총회)일 지정안, 제1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6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와 복지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11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 장 :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채택된 심의안건 중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한 심의안건인 제1호 ~ 제7호 의안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규정 개정 및 불용품 매각 관련 심의 안건인 제8호~제9호 의안 그리고 제6대 회장선거와 관련한 심의안건인 제10호 ~제11호 의안을 각각 구분하여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제안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 제7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과 복지관 권미애 부장, 어린이집 이승희 원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 제3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권미애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4호 ~ 제6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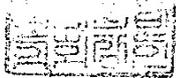
- 이승희 원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7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양광호 이사 : 2013 제주 나눔 대축제 사업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나눔 대축제 사업비가 언제 확정되었는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지난 7월 중순 경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 사업비가 확정되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일정이 촉박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 사전 집행한 내용은 무리가 없지만 2013 제주 나눔 대축제의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인데 촉박한 일정에서라도 이사회를 통해서 먼저 이사들에게 설명을 하고 추진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산출내역을 행사운영비로 뭉뚱그려 놓았는데 이 부분은 그 항목별 세부내역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다.
- 김성건 부장 : 다음 회의자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하며 그 세부내용들은 별지를 통해 보고하고 결산서에 그 내용을 자세히 표시하겠다고 하다.
- 황의식 이사 : 이사회와 책임과 권한들이 있는데 가급적 앞으로는 이사회 승인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기를 요청하다.
- 의 장 : 이번 2013 제주 나눔 대축제의 경우 사업비 확정이 7월 중순 경에서야 이뤄지고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소 촉박하게 일이 추진되다보니 부득이 사전 이사회에 사업

보고와 예산편성 보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인센티브 7,140,000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최우수복지관 인센티브는 주민숙원사업 3,640,000원, 직원 역량강화 사업 1,000,000원, 기념품 제작 2,500,000원으로 편성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주민숙원사업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다.
- 의 장 : 최우수복지관 인센티브를 어떻게 사용할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복지관이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것도 지역주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사회복지시설평가 최우수복지관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회식하고 여행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일부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

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직원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황의식 이사 :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의 장 :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인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같이 박수를 쳐 주기를 요청하다.
- 고두승 이사 : 회장님이 주민들을 위해 쓰여졌으면 하는 의중을 알고 직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지역주민 숙원사업에도 사용을 하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앞으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부형중 이사 : 고두승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 조성태 관장 : 복지관 직원들을 위한 이사님들의 말씀에 고맙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지를 찾고 있으며 현재 실내 체력단련실 기능보강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직 주민들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다.
- 의 장 : 그럼 이 사항은 조성태 관장에게 일임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양광호 이사 : 지금 현재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급여가 타 복지관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묻다.



- 조성태 관장 : 타복지관의 경우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복지관은 2011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그 이유는 보조금이 적어서 그런것인지를 묻다.

- 조성태 관장 : 보조금은 타복지관과 같지만 타복지관과 비교해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높은 호봉의 경력직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동일한 보조금하에서 편성하다보니 그 기준을 같이 따라가기 어렵다고하다.

- 양광호 이사 :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 이상언 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이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자꾸 이 사항을 가지고 또다시 문제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 지원인원 수와 지원일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방학일수가 줄어들어 생긴 차이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산출내역에는 그 세부내용을 표기해줘야 할 것 같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보조금은 타 복지관과 동일하게 지원받고 있는데 비해 호봉이 높은 경력직 직원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한정된 보조금 한도내에서 높은 호봉의 직원들이 많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계속해서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 하자고 하다.
- 의 장 : 이 사항은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 김군택 이사 : 아동청소년 나이트케어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왜 굳이 영어를 사용한것인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중에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있어 그 사업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영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다.
- 김군택 이사 : 가급적이면 영어보다는 우리말 한글을 사용하도록 건의하다.
- 김호성 이사 : 김군택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 양은심 이사 : 아라어린이집의 세출예산서에서 자산취득비 항목에 자산취득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표기가 없어 어떠한 자산을 취득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그 내용을 묻다.
- 이승희 이사 : 원아들 교재·교구 구매와 노후 세탁기 교체를 하겠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세입예산서를 살펴보면 세입 내용이 경상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경상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일반 운영비들로는 집행할 수 있지만 자산취득비로 편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다.
- 이승희 이사 : 어린이집 운영보조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려면 자본보조금으로 지원받아야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므로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제주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다.
- 의 장 : 양은심 이사의 건의로 아라어린이집 세출예산의 자산취득비 예산액을 일단 예비비로 했다가 향후 제주시의 확인을 얻은 후 예비비 사용을 통해 자산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은심 이사의 의견에 대해 이사들의 동의를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김군택 이사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며 제1호 의안과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5호 의안, 제6호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를 요청하고 제4호 의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복지관 선정 인센티브 집행내용을 직원 포상금 지급과 주민속원사업을 위해 집행할 수 있도록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일임하고 제7호 위안은 아라어린이집 아라어린이집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의 자산취득비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하다.
- 의 장 : 김군택 이사의 안건 통과 의견에 대해 참석이사들의 동의를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2회 후원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 제주 나눔 대축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1회 아동급식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2회 아동청소년 나이트케어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의 장 : 그리고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회복지시

설평가 최우수복지관 인센티브 집행을 직원 포상금 지급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이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7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의 자산취득비 항목의 추가예산을 예비비로 추가편성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8호 ~제9호 의안을 상정하다.

마.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복지관 권미애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권미애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8호 ~제9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고두승 이사 : 인사규정 개정내용에서 전에 제가 복지관장 직을 수행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으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그 직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장이 배제되고 협의회에서 채용이 결정된 직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상황은 향후에 그 직원에 대한 책임 또한 관장이 갖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이 직원 채용에 대한 사항을 주관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의 장 : 고두승 이사가 건의한 인사규정개정안에 대해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이

복지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에 대한 사항을 주관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자는 의견에 대한 이사들의 동의를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양은심 이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것인지를 묻다.

- 권미애 부장 : 저희 복지관 자활근로사업으로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청소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인이 아니다보니 청소용역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수 없이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개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운영규정에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번 이사회에서 운영규정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일단 지금 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고 하는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특별회계로 별도 분리해서 관리했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이 사항은 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이전에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복지관 운영규정 내용을 개정하는것이 맞는 절차이고 그 수익금은 수익사업회계를 별도로 두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현재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44조에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다.
- 의 장 : 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을 포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으로 세무서의 의견대로 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처리 하자고 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양광호 이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은 어떤기관의 규정에 준한 내용인지를 묻다.
- 권미애 부장 : 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에 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다.
- 의 장 : 복무규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비교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도록 사무처에 지시하다.
- 양광호 이사 : 보수규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개정하는것인지를 묻다.

- 권미애 부장 :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개정하는것이라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규정개정에 있어서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가 없으므로 법인 사무처에서 근로기준법 내용과 비교해서 그 내용을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의 장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규정개정 내용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사무처에서 확인하고 조정하도록 지시하다.
- 양은심 이사 : 보수규정개정 내용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산출식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표기된 209시간 기준이 월인지 년인지를 묻다.
- 조성태 관장 : 월 기준시간이라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꼭 규정에 담아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현재 시간외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규정에 넣음으로서 향후에 직원들이 이 규정을 근거로 미지급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규정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한 것인지 묻다.
- 조성태 관장 : 지금 규정에 표현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한 산출식일 뿐이라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규정 내용을 이렇게 산출식까지 표현하지 말고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등이 바뀌면 그 때마다 이 산출식들을 바꿔야 하는데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한다.
- 김호성 이사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임금 가이드라인 표준안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 양광호 이사 : 예비규정 일부개정안의 개정 근거는 무엇인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사회복지협의회 예비규정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
- 양광호 이사 : 숙박비 등은 실비로 하면 안되는지를 묻다.
- 부형종 이사 : 실비로 했을 경우 숙박 시설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 허철춘 감사 : 공무원 예비규정에서 숙박비 상한액이 5만원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 의 장 : 공무원 예비규정에서 숙박비가 5만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도록 하자고 한다.
- 양은심 이사 : 직제규정 개정안에 맞춘다면 과장이 팀장으로 되는것인지를 물으면서 그렇다면 예비규정 등도 그 직책을 바꾸어 써야 맞다고 한다.

- 권미애 부장 : 직함은 변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한다고 하다.

- 의 장 : 더 이상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상정된 제8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운영규정안과 직제규정안은 원안 통과를 복무규정은 사무처에서 근로기준법과 비교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보수규정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수지원기준에 따르도록 수정하고 직원여비규정은 숙박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수정하고 인사규정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이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 보고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제9호 의안 불용품 매각승인안 대하여는 원안 통과하는 것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제8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규정 일부 규정안에 대해 운영규정개정안과 직제규정개정안은 원안 가결하고, 복무규정개정안은 사무처에서 근로기준법과 비교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보수규정개정안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수지원기준에 따르도록 수정하고, 직원여비규정개정안은 숙박비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하여 처리하고, 인사규정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이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 보고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의 장 : 그리고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제9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불용품 매각승인안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바.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10호 ~ 제11호 의안을 상정하다.

사.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0호~제11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부형종 이사 : 후임 회장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협의회 정관에 따라 2013년 12월 11일까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현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가입한지 1년 이상인 회원 중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되어있음으로 가급적 선거에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회비납부 문서를 최종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오니 이 사항을 감안하시고 선거일을 정해주시기를 부탁하다.
- 의 장 : 11월 27일이 어떠한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부형종 이사 : 선거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

게 된다고 하다.

- 의 장 : 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정해야 하는 데 이사들에게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다.
- 양은심 이사 : 양광호 이사를 추천하다.
- 고두승 이사 : 양은심, 강규진 이사를 추천하다.
- 임태봉 이사 : 부형종 이사를 추천하다.
- 부형종 이사 : 이연봉 부회장을 추천하다.
- 의 장 : 선거관리위원 5명으로 이사님들이 추천한 이연봉 부회장, 양광호, 양은심, 강규진, 부형종 이사로 결정하는것에 대해 이사들에게 동의를 구하다.
- 이사들 동의, 제청하다.
- 의 장 :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인 제10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6대 회장선거(임시총회)일 지정안은 2013년 11월 27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제1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6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은 이연봉 부회장, 양광호, 양은심, 부형종, 강규진 이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8. 폐 회

- 의 장 : 오늘 장시간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함을 밝히고 폐 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부형중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3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임의회의

(폐회시간 12:25)

2013년 10월 25일

회 장 : 이 동					
이 사 : 고 치 환		김 재 익		송 옥 화	
부 형 중		강 규 전		김 순 호	
양 은 심		양 광 호		김 호 성	
황 의		김 군 택		고 두 승	
임 태 봉					
				확인자 : 김 수	
				기 록 : 김 성	